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굿링크
○ 협 약 제 품 : 네트워크스위치
(C9500X *2, C9200L-48T, MDS 9148S *2, C9407R*2, C9400-LC-24X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6,62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굿링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아이웍스
○ 협 약 제 품 : 스토리지(IBM V7000, IBM FlashSystem 52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2,85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아이웍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휴네시온
○ 협 약 제 품 : 망연계솔루션(i-oneNet V5.0 *3)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3,95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휴네시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스피어에이엑스
○ 협 약 제 품 : 영상반출시스템(시큐워처 for CCTV Enterprise System ver 2.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3,288,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스피어에이엑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시큐아이
○ 협 약 제 품 : 방화벽(NGF2000 *2, NGF2100, NGF1000, NGF300 *2)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6,4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시큐아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ESE(이에스이)
○ 협 약 제 품 : 통합플랫폼 S/W(리노 스마트센터플랫폼 V3.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13,95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 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 ESE(이에스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제조사·공급사 : ㈜ 송우인포텍
○ 협 약 제 품 : 스마트선별관제솔루션(아이비스 V2.0),스마트관제솔루션서버(SWCS-70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금23,70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약금액은 연간유지관리 산출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

발주기관명 합 천 군 수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 송우인포텍 (인)